

# 변경 대비표

1. 해당 투자신탁명 : 우리G KOSPI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_파생형]

2. 효력발생일 : 2023.05.18 (목)

3. 변경 사유 :

- 부책임용전문인력 삭제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2023.03.07 기준	<a href="#">2023.05.08 기준</a>
운용전문인력	<p style="text-align: center;">2023.03.07 기준</p> <p>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공동운용)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인력" 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용인력" 이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운용현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현황입니다)</p> <p>주 2)~주 6) &lt;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2023.05.08 기준</a></p> <p>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공동운용)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인력" 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a href="#">부책임용전문인력</a>"은 <a href="#">지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운용본부 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a></p> <p>주 2)~주 6) &lt;현행과 동일&gt;</p>

##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2023.03.07 기준	<a href="#">2023.05.08 기준</a>
운용전문인력	<p style="text-align: center;">2023.03.07 기준</p> <p>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공동운용)이</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2023.05.08 기준</a></p> <p>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공동운용)가 담당하며, "책임</p>

	<p>담당하며, "책임운용인력" 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인력" 이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운용현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주 2)~주 6) &lt;생략&gt;</p>	<p>운용인력" 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u>부책임운용전문인력</u>"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u>상기 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운용본부 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u> 주 2)~주 6) &lt;현행과 동일&gt;</p>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a href="#">2023.05.18 추가</a>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p>2023.03.07 기준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공동운용)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운용현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주 2)~주 6) &lt;생략&gt;</p>	<p><a href="#">2023.05.08 기준</a>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공동운용)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u>부책임운용전문인력</u>"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u>상기 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운용본부 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u> 주 2)~주 6) &lt;현행과 동일&gt;</p>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p>2023.03.07 기준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공동운용)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인력" 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인력" 이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p>	<p><a href="#">2023.05.08 기준</a>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공동운용)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인력" 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u>부책임운용전문인력</u>"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u>상기 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운용본부 내 다</u></p>

	<p>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운용현황은 주식 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현황입니다)</p> <p>주 2)~주 6) &lt;생략&gt;</p>	<p><u>큰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u></p> <p>주 2)~주 6) &lt;현행과 동일&gt;</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 대상]</p>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4 호 및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p> <p>1. ~5. &lt;생략&gt;</p> <p>주 1)~ 주 2) &lt;생략&gt;</p>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4 호 및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p> <p>1. ~5. &lt;생략&gt;</p> <p>주 1) ~ 주 2) &lt;현행과 동일&gt;</p> <p><u>주 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 방법</u></p> <p><u>가.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ETF 해당)</u></p> <p><u>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모든 공모펀드 해당)</u></p> <p><u>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u></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다. 기타 투자위험</p>	<p>-</p>	<p><u>증권대차 거래 위험 :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u></p>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	<신설 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2022.03.07 기준	2023.05.08 기준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2023.03.07 기준	2023.04.28 기준

<신설 1>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가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가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전기 대비 매매회전율은 (28.76)% 상승되었으며, 이는 빈번한 환매요청에 의한 주식의 매도가 증가되었고 이에 투자신탁 설정잔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빈번한 환매가 발생할 경우 이 투자신탁 이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전략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15기 0백만원, 14기 0백만원, 13기 0백만원 발생)

주4)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15기 0백만원, 14기 0백만원, 13기 0백만원 발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3,249.58	2.63	0.02	14,769.57	2.94	0.02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0.00	0.00	0.00	0.00	0.00	0.00
부동산	0.00	0.00	0.00	0.00	0.00	0.00
장내파생상품	2,132.87	0.11	0.00	4,407.50	0.22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15,382.45	2.74	0.02	19,177.07	3.16	0.02

주1)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자본시장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참고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 주)

주식 매수		주식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84,193	3,165.92	94,907	4,563.63	6,930.41	65.85	0.00

주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분류 적용

(분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단기금융)

공모집합투자기구(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단기금융)